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6

발의년월일: 2019년 5월 21일

발 의 자 : 홍성룡, 이정인, 노승재, 이병도,

강동길, 성흠제, 김희걸, 김제리,

김재형, 김정환, 송아량, 봉양순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저성장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창업이 주목받고 있으나,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우수한 기술과 인재들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술창업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기술창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별표)
- 나. 기술창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기술창업 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기술창업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함(안 제8조)
- 마. 기술창업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창업 성장기 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술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기술창업의 현황·여건 및 전망
 - 2. 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 3. 기술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 4.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술창업 지원 시행계획("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창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술창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 3.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연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4. 기술창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 5. 기술창업 기업인의 고충과 현장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서울특별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2. 기술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3. 기술창업기업의 임직원
- 4. 그 밖에 기술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창업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기술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 및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
 - 2.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
 - 3. 기술창업기업 보육에 관한 사업
 - 4.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 사업
 - 5.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관한 사업
 - 6. 판로지원 및 해외지출 지원에 관한 사업
 - 7.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
 - 8.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 9. 기술창업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10. 관계기관과 연계한 기술창업 문화 확산 사업
 - 11.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술창업촉진지구 지정 등) ① 시장은 기술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창업촉진지구 내의 창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보조, 자금지원 연계, 마케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기술창업주간 지정·운영) ① 시장은 기술창업 문화 확산과 기술창업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있다.
 - ② 시장은 창업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시장은 기술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u>기술창업 업종</u>(제2조제1호 관련)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			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대분류	중분류	업종	
제조업 (C)	(C) 10	식료품 제조업		(J) 58	출판업	
	(C) 11	음료 제조업		(J)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C) 12	담배 제조업	정보	(J) 60	방송업	
	(C)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통신업 (J)	(J) 61	우편 및 통신업	
	(C)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 /	(J)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J) 63	정보서비스업	
	(C)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전문	(M) 70	연구개발업	
	(C)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과학 및	(M) 71	전문 서비스업	
	(C)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술 서비스업	(M)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C)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M)	(M)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C)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	(N) 75		
	(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업지원 및 임대서비 스업(N)		사업 지원 서비스업	
	(C)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교육서비스	(P) 85	교육 서비스업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업(P) 보건업 및			
	(C) 24	1차금속제조업	사회복지	(Q) 86	보건업	
	(C)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서비스업 (Q)	(Q)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예술,스포 츠 및	(R)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C)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C) 28	전기장비 제조업	(R)			
	(C)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 32	가구 제조업				
	(C) 33	기타제품 제조업				
	(C)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및 제8조(기술창업지원사업)에 따라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명시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는 기술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창업 관련 사업을 우영 중이므로 비용 미추계

〈서울시 예산서(2019)〉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2019	세부내역		
서울창업허브 운영	16,211	19,013	서울창업허브 민간위탁금(181억원) 중 창업생태계 조사연구비 320백만원		
서울창업카페 운영	965	1,812	_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1,629	1,075	-		
창업보육센터 시설 개선	120	270	_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1,290	1,275	_		
청년창업꿈터 운영	247	267	-		

- 조례안 제6조, 제7조에 따라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위 원회 운영비용이 발생함
- 조례안 제9조에 따라 기술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창업자에 대한 임대료 및 자금 지원 등을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대상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지정되 지 아니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종합계획수립), 제10조(기술창업주간 지정운영), 제11조(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은 기술창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규정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39,000천원(연평균 7,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9,000천원으로 연평균 7,8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2020~2024년) 동안 위원회 운영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9,000천원(연평균 7,8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 연간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운영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		-	-	-	-	-	-
세입	-		1	-	1	-	-	-
	소계(a)		-	-	-	_	_	-
세출	제6조 제7조	기술창업정책 자문위원회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소계(b)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총 비용(b-a)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 비용추계 총액 ≒ 39,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운영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용
 - = 150.000(2시간 초과) × 13명 × 4회
 - = 7.8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박종철

2 02-2180-7943

e-mail: pjc99@seoul.go.kr